

사무관리론

【문제 1】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법정민원의 개념을 쓰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의의 및 절차, 민원후견인의 지정 및 직무,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민원사무 처리 제도로서 민원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그리고 민원실무심의회 목적과 운영방식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문서의 시행에 있어서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 및 생략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회의 유형을 제시하고, 정부영상회의실 관리·운영을 위한 정부관리소장의 조치사항과 해당 시설의 사용신청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제 4】 행정업무 인계·인수의 절차 및 인계·인수서의 작성내용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행정사실무법

【문제 1】 甲은 1988. 9. 1. A제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터빈 및 보일러 작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우측 청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를 요청하였고, 2004. 3. 2. 시약생산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9. 2. 6. 퇴사하였다. 甲은 2009. 3. 6.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 5. 9.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甲에게 통보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장해보상청구권은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물음 1)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물음 2)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2】 행정사법령상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